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293
------------	------

2021년 4월 26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추승우 의원 외 9명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4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1년 4월 2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추승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사용·수익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까지 운영자증명서에 등재하고 운영자증명서에 등재한 자에 한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나, 조례 내에서 운영자 금지행위 규정시 적용되는 운영자의 범위와 달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·보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
- 아울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제3조제6항의 조문을 수정하고, 일부 누락된 각 호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·보완(안 제9조제3항)
- 조문 수정 및 각호 내용 추가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4. 9. ~ 2021. 4. 16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
-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사용·수익하도록 하는 운영자의 범위와 운영자 금지행위 규정시 적용되는 운영자의 범위를 조례내에서 동일하도록 정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-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일부 누락된 각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함

1) 보 행정 책과-4925호(2021.4.15.)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 범위가 일부 조항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이를 동일하게 하는 한편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에 점용허가 취소 및 미갱신의 경우 점용면적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2조제6호²⁾ 및 제7조제1항³⁾에 따르면 시장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의 보도상영업시설물(이하 '시설물'이라 한다)을 사용·수익하는 운영자에게

‘운영자,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’을 등재한 운영자등록증을 발급하여 해당 운영자등록증에 등재된 사람만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2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운영자"란 도로점용허가(이하 "점용허가"라 한다)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·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) 제7조(시설물 관리)

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,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또한 현행 조례 제9조⁴⁾ 및 제10조⁵⁾에서는 운영자의 행위금지 사항과 함께 이를 위반시 원상회복 명령과 별도로 벌점 부과 및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○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운영자등록증에 ‘운영자의 배우자’가 포함되어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‘운영자의 배우자’는 시설물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

각 조항간 상충이 발생하고, 시설물 등록과 시정명령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설물 등록과 금지행위 규정시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
○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점용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에 ‘점용허가 취소 또는 미갱신된 경우 해당 시설물 인도 및 원상회복 사항과 함께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’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

4) 제9조(행위의 금지)

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4. 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

5) 제10조(벌점 등) 시장은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·원상회복명령 등과 별도로 별표 2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, 해당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조례 개정을 통해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기간 만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무단 점용 및 명도 소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필요성이 인정됨

- 다만, ‘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’의 경우 시설물 계약당사자에게는 과도한 권리 침해 요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실제 관련 내용 적용시에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임
- 참고로 ‘1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하철 역사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⁶⁾이 있었으나,

헌재결정례⁷⁾를 살펴보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경우 운영자와 서울시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지 않을 경우 도로의 신속한 원상회복이 어렵고, 절차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제소전화해조서 제출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6)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(’13.12.12.) : 계약 체결시 반장제로 요청하던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관행에 제동

7) 헌재결정례, 2007헌마1387 :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내용 중 “법원에서 성립된”을 “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 각 호를 아래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1.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9조제3항제4호 내용 중 “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”을 “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설물 운영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점용허가) ①~⑤ (생략)	제3조(점용허가) ①~⑤ (현행과 같음)
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<u>법원</u> 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,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 기간에 따른다.	⑥ ----- ----- ----- <u>법원</u> <u>에서 화해가 성립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u>< 신 설 ></u>	1. <u>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</u>
	2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</u>
제9조(행위의 금지)	제9조(행위의 금지)
①~②(생략)	①~②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1.~3.(생략)	1.~3.(현행과 같음)
4. 시설물을 <u>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</u>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	4. ----- <u>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</u> ----- -----